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16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배준성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11,246,75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24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3. 접수 제120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2.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31698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12.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 사건 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이 위 청구에 그대로 미치므로 이 법원은 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고,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내지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무효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채무자인 D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7. 4. 21. 2,5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고 원고의 지급요구시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115호) 및 ‘C 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695호)가 작성된 사실, ‘C 은 원고에게 8,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2019. 4. 26.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475),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2. 15.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8.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9. 8. 3. C의 배우자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별지

부동산 목록 (집합건물)

1.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93.1㎡

2층 186.97㎡

3층 336.55㎡

4층 336.55㎡

5층 336.55㎡

6층 336.55㎡

7층 336.55㎡

8층 336.55㎡

9층 336.55㎡

10층 336.55㎡

11층 336.55㎡

12층 336.55㎡

13층 336.55㎡

14층 336.55㎡

15층 336.55㎡

16층 336.55㎡

17층 336.55㎡

18층 336.55㎡

19층 336.55㎡

20층 336.55㎡

21층 336.55㎡

22층 336.55㎡

23층 336.55㎡

24층 336.55㎡

25층 336.5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44209㎡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2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3.9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44209분의 63.7362

이상.